

#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재외동포



김 봉 섭 (재외동포재단)  
(bskim@okf.or.kr)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말과 일제강점기 시절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 거주하던 동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민국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와 재외동포사회(Overseas Korean Community)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는지를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시기의 재외동포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경계를 한반도 밖으로까지 확장하였고, 임시의정원에 재중·재러·재미동포 대표를 포함시켰다. 동포사회의 자조·자치능력을 독려하기 위해 ‘임시거류민단체’를 제정·공포하였고,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중국에 주화대표단 등을 설치하여 동포들의 본국 귀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해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임시정부로서는 국민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는데, 이는 “국민=동포, 동포=국민”이라는 기본사상을 유지·계승한 결과였다.

주제어 :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외동포, 재외동포사회, 국민, 동포

## I. 머리말

예나지금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정세가 녹록치 않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대화와 미·북 협상은 구체적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국면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한·일 관계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다. 12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또다시 보는 것 같아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3·1운동 100주년(2019.3.1)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4.11)을 맞이하였다.

이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정부는 물론 민간차원에서, 특히 재외동포사회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오랜 열망이 전 세계인들에게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동아일보 2019/01/16; 연합뉴스 2019/01/16; 노컷뉴스 2019/01/19; 연합뉴스 2019/01/20; 연합뉴스 2019/02/04; 매일경제 2019/02/04; 미주한국일보 2019/02/15; 뉴스1 2019/02/19; 미주한국일보 2019/02/20; 노컷뉴스 2019/02/24; 월드코리아 2019/02/25; 뉴시스 2019/02/25; 연합뉴스 2019/02/27; 매일경제 2019/03/01; 뉴스파워 2019/03/02; KBS 2019/03/02; 월드코리아 2019/03/03; KBS 2019/03/03; 미주한국일보 2019/03/04; 재외동포신문 2019/03/04; 재외동포신문 2019/03/05; 월드코리아 2019/03/05; 미주한국일보 2019/03/06; 미주한국일보 2019/03/11; 미주한국일보 2019/03/18; 미주한국일보 2019/03/20; 미주한국일보 2019/03/22; 미주한국일보 2019/04/05; 머니투데이 2019/04/08; KTV 2019/04/11; YTN 2019/04/15; 재외동포신문 2019/05/08; 재외동포신문 2019/05/10).

이 논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1860년대 이후 한국인의 해외이주 시기 구분과 1910년 국권 상실 이전까지 해외 한국인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우리 정부 재외동포정책의 원류(原流)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재외동포정책의 실체와 내용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 II. 한국인의 해외이주 기점은 언제부터인가?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과서의 워크북인 『생활의 길잡이 5』(교육과학기술부 2012, 168) 제10단원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인」 ‘재외동포가 세계 여러 나라에 살게 된 까닭을 알아봅시다’에는 흥미로운 연습문제가 하나 있었다.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재외동포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중남미, 중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들의 이주 유형을 ① 이민선을 타고 도착하여 낯설고 힘든 환경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성공한 한인, ②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으로 싸운 독립군의 후예, ③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의 간호사와 광부로 일해 온 한인, ④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이나 취업, 국제결혼 등으로 이민을 간 한인, ⑤ 에네켄의 농장에서 고된 노동을 이겨 내고 쿠바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정착해 온 한인, ⑥ 강제이주의 고통스런 삶을 극복하고 살아온 한인, ⑦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힘겹게 견디며 살아온 국외로 입양된 한인, ⑧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를 세워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르치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온 한인 등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인의 해외이주의 역사적 배경과 동기, 이들의 이동경로와 현지정착 등이 매우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진행되어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이를 단순화·일반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표 1〉 참조).

〈표 1〉 한국인의 해외이주 시기 구분

구분	연도	이주배경과 주요 이주자	규모	특징
제1시기	조선·대한제국기 (19세기 중반~1910)	1860년대 대규모 흉년으로 인해 간도·연해주 등지로 불법월경한 사람,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등에서 일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이민선을 탄 사람 등	10만 여명	생계이민· 농업이민
제2시기	일제강점기 (1910~1945)	1910년 국권 상실 후 중국만주로의 농업이주, 일본으로 자발적 이주, 정치적 목적의 해외망명, 1937년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1939년 이후 일제의 강제징용·징병자 등	3백만 여명	망명이민· 강제이민
제3시기	8·15해방 이후 (1945~1962)	1945년 해방 이후 극심한 사회혼란 속에서 발생한 밀항자, 6.25한국전쟁 부산물인 국제결혼이민, 전쟁고아·훈혈 해외입양 등 특수이주자, 여러 가지 국내외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귀환 동포 등	2백만 여명	특수이민· 미귀환이 민
제4시기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1962~현재)	1962년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외로 이주한 100만여 명과 현지 출생 외국국적 손·자녀, 1990년대 초 공산권과의 수교 이후 국내체류동포, 사할린 등지에서 돌아온 영구귀국동포, 해외이민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되돌아온 역이민 고령자 등	1백만 여명 이상	자유이민· 글로벌이 민·귀환이 민·역이민

출처: 김봉섭(2011, 16-21). 기존 자료들을 토대로 재구성<sup>1)</sup>.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이후 우리 민족의 해외이주 역사는 1860년대 연해주(沿海州) 이주를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각 시기별로 이주를 촉발시킨 배경과 동기는 제각각이었다.

즉, 제1시기는 한말의 사회경제적 위기와 국내외 정세 불안 요인 등이 주요인이었다면 제2시기는 국권 상실과 일제의 토지강탈, 해외독립운동기지 건설, 비옥한 만주(북간도)로의 집단이주, 스탈린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일제의 강제징용·징병 요인 등이 주요인이었다. 제3시기는 1945년 해방 이후 이승만·장면정부의 과도기적 혼란과 미귀환자 발생 요인 등이 주요인이었다면 제4시기는 박정희정부 이후 현재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다.

오늘의 주제와 연관시켜 살펴본다면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자 한반도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일제의 식민지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건인가? 아니면 국외로 이주해 새로운 기회를 엿볼 것인가? 그 결과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비자발적으로 또는 국내상황의 악화로 해외로 이주하게 되었고,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탄생하게 된 대한민국임시정부(1919~1945)와 어떤 형태든지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

### Ⅲ. 20세기 초, 한국인들은 자신들은 물론 해외 이주 한국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

우선, 기록상으로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한인’(1887)으로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고종 24년(1887년 3월 25일) 조선과 중국은 육로전선(陸路電線) 가설을 위한 합동조약(合同條約)을 체결하였는데 제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自漢城至釜山，設有四局，由朝鮮政府派官經理。暫借用洋匠一人架設，俟設成後，仍商請華電局洋匠熟料，至各局司事學生，聽用韓人，華人，斷不准僱用他國人。”(한성에서 부산까

- 1) 권희영 1999; 김계르만 2005; 국사편찬위원회 2005; 이광규 2006; 최진욱 2007; 외교통상부 2009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재구성.
- 2) 1860년대 당시의 해외이주는 오늘날처럼 적극적 의미의 이민(移民)보다는 전쟁포로, 영토확장 편입, 조공, 인질, 망명, 귀화 등 정치적·경제적 피난민(避難民)이거나 유민(遺民)의 성격이 강하였으므로 우리 재외동포 해외이주사는 1860년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통설이다.

지 4개의 국을 설치하고 조선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경영한다. 잠시 양장(洋匠) 1인을 채용하여 가설을 하며 일이 끝난 뒤 화전국의 양장을 협의 신청하여 상세히 점검한다. 각국의 사사(司事)와 학생은 한인과 화인을 채용하며 다른 나라 사람은 단연 고용하지 않는다.)(《조선왕조실록》 고종 24권, 24년(1887) 3월 25일. 合同條約).

여기서 ‘한인(韓人)’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이는 ‘화인(華人) 또는 ‘일인(日人)’에 대비되는 말로 사용됐으며, ‘대한인(大韓人)’, ‘한국인민(韓國人民)’의 줄임말이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인을 뜻하는 용어로 “대한인, 재일한인, 아토(俄土)한인, 재미한인, 미국한인, 북미한인, 북미대한인, 아한인민, 뉴약류한인, 해삼위거류아한인사, 목서가거류한인, 재합한인, 입로한인, 한인이주(이주한인), 도일한인, 간도한인, 포염한인” 등 매우 다양한 호칭들이 나타나고 있다.

○ 대한인(1899) : “大韓人이 인물을 평론함이 其賢愚善惡을 從하야 曰是曰非호되 至於各郡吏典하야는 必曰奸奸□이라 함이 余深思數年에 乃得하니 世人的 言이 其本源을 推究치 못함이로다. ….”(《황성신문》 1899년 1월 24일자. 1면 론설).

○ 한국인민(1899) : “한국인민이 俄國영토에 이주한 자 如左호니 海蔘威의 戶數 … 物羅富保斯其의 호수 … 連秋지방의 호수 … 이상 총계 삼만삼천사백사십육인디 今에 俄國영토에 住하야 점점 俄國에 入….”(《황성신문》 1899년 6월 7일자. 2면 잡보: 俄土한인).

○ 대한생령(1900) : “함북유민이 두만강을 渡하야 江西島에 이거호는 자 多호더니 該島民 崔봉길, 김완길, 장중경 등이 내부에 청원호기를 窮不資生호야 越江圖生이 己有年所에 既無易服호고 恒切懷土라. 疆土雖殊나 莫非我大韓生靈이어늘 咸北종두위원이 過江來往에 請之不來호니 현재 富寧郡 種痘認許員을 파송시술호면 該경비는 民自辦級호깃다 호얏더라.”(《황성신문》 1900년 9월 28일자. 2면 잡보: 韓民請痘).

○ 한민(1904) : “日本國人民不準在韓民已佔之處, 妨害其漁利. 犯者懲罰, 尙有肆行暴舉者, 押交附近領事, 從嚴究辦.”(일본 인민들은 한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고기잡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자는 징벌한다. 혹은 제멋대로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부근의 영사에게 압송해 보내어 엄격하게 신문하여 처리한다.)(《조선왕조실록》 고종 44권, 41년(1904) 6월 4일. 韓日兩國人民魚採條例).

○ 한국인(1909) : “청국 림강현에 한국인을 이민하는 스에 디하여 전일에도 협상문제가 니러났고 쯔 그후에 봉턴에 있는 청국관리들이 종종 의론한 결과로 금번에 규축을 제명 하야 한국에 주지하는 청국령으로부터 통감부에 통첩하였는디 … 四. 한국민으로 청국 에 귀화하기를 원하는 자의게는 청국인과 7치 세를 받되 까다름이 업게할 스.”(《대한 매일신보》 1909년 1월 6일자. 2면 잡보: 한국이민 규축).

○ 조선인(1910) : “포역에 재한 조선인은 불온한 模樣이 有하나 露國관헌의 경계엄중함으로 大事에 不至하였다더라.”(《황성신문》 1910년 8월 30일자. 2면 전보: 浦鹽한인 불 온). \* 블라디보스토크(浦鹽).

○ 2천만 민족(1907) : “被告羅寅永은 供稱, 光武九年十一月에 我韓外交權을 日本에 讓與 新條約이 雖曰被逼이나 未有皇上陛下允許하고 又無參政大臣之捺章이거늘 噫! 彼五 賊李址鎔, 李根澤, 朴齊純, 李完用, 權重顯이 擅書可字而許之하야 內治政權과 全國 利權을 竝爲讓與하야 驅二千萬民族하야 作人奴隸하니 壞損國權之律이 既在法文일쎄더 러 憂憤所激에 欲遂亂臣賊子人人得誅之義하야 ….”(피고 나인영은 공술하기를, 「광무 9년 11월에 우리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양여한 새 조약이 협박을 받았다고 하나 황제 폐하가 윤택한 것이 없고 또 참정대신이 날인한 것이 없습니다. 아! 저 5적 이지용, 이근 택, 박제순, 이완용, 권중현이 제멋대로 가(可)자를 써서 승인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 권과 전국의 이권을 모두 양여함으로써 2천만 민족을 내몰아 남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국권을 손상시킨 자에 대한 형률이 이미 법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심과 울분이 치밀 어 사람마다 역적을 처단하려는 의리를 이룩하려 하였습니디.)(《조선왕조실록》 고종 제48권, 44년(1907) 7월 6일. 법부대신 조중응(趙重應)의 보고).

○ 대한민족(1908) : “오직 우리 한국의 동족형제들이 곤궁소치로 기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야 나라를 버리고 고향을 쫓겨나서 하늘가에 표박하야 더 북미국 상항디방에 가서 머느는자 - 수천인이나 되는데 그 공수와 령수가 잇서서 보호함도 업고 일꾼일전의 죽본도 업는자-라. 풍… 더 만리밖기 잇는 동포들의 고생혈성으로 하는 사업을 가히 성취케 할 거시오, 우리 대한민족의 충이하는 도덕의 맛음을 쯔한 가히 세계에 발표하지 니 우리 전국동포는 이거슬 삶혀 주의하심을 심분 바라노라.”(《대한매일신보》 1908 년 1월 11일자. 1면, 미국 상항에 잇는 공립신문을 위하야 의연금을 모집하는 발기취지서 /대호칭).

○ 조선민족(1908) : “오호-라. 평안도사 사름 낫흔 의기로 엇지 지스가 세 사름뿐이리오. 몇십만 지스가 장춧 날거시오. 신성한 조선민족으로 엇지 평안도에만 지스가 나리오, 전국녘에 몇백만 지스가 날줄노 밋노라.”(《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9일자, 1면  
론설: 평안도에 지스 삼인이 새로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동포(同胞)’라는 말이 좀 더 한국인들의 정서에 와 닿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한제국 군대해산 직후인 1907년 9월, 13도 창의대장이었던 이인영(李麟榮)의 이름으로 발표된 ‘선언문’의 내용이 그것이다.

동포여! 우리는 단결하여 목숨을 바쳐 독립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야만적인 일본인들의 극악한 죄악과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해야 합니다(1907.9).

1910년 8월, 경술국치 소식을 접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의병장 유인석(柳麟錫)의 이름으로 발표된 또 다른 13도 창의군의 선언문도 마찬가지였다.

저 아름다운 3천리 강토는 시조 단군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며, 우리 2천만 동포는 단군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고국은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버리려 하여도 버릴 수 없는 땅이다. 차라리 머리를 끊어 죽을지언정 5천년 역사의 조국은 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또 목숨을 버릴지언정 남의 노예가 될 수 없다. … 우리 동포는 모두 무장하여 피를 흘릴 때가 왔다!”(유인석 1910.8).

원래 동포(同胞)는 “천지의 기를 같이 받은 형제”(民吾同胞)<sup>3)</sup>라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대한동포’(1898), ‘2천만 동포’(1905), ‘국민동포’(1906), ‘이주동포’(1906), ‘재외동포’(1906), ‘내지동포’(1906) 및 ‘해외동포’(1906), ‘주외동포’(1907), ‘본국동포’(1907), ‘전국동포’(1907), ‘거류동포’(1908) 등 한국인은 물론 해외거주 한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고유명사로 진화하였다.

3) 조선중기 학자 金大鳴(1536~1603)의 시문집 『白巖集』(1800, 목활자본) 참조. 「民吾同胞賦」는 사람은 하늘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으므로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형제와 같으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을 친자식같이 사랑하여 모두 나의 동포라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되고, 비록 죄가 있는 죄인이라도 측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표 2〉 ‘동포’ 개념의 확대 양상<sup>4)</sup>

구분	출현연도	세부 내용
대한동포	1898	“독립협회에서 독립문 건축과 독립관 슈리와 독립원 설치는 우리 대한동포 형제의 보조금으로써 경용을 지발 함은 너외 국민이 다 아는 바이어늘 ….”(《독립신문》 1898년 7월 26일자. 4면 광고).
이천만 동포	1905	“… 今我대한에 일반국민이 互相稱謂하되 이천만동포형제라 하니 夫동포의 칭위는 同一父母의 胞胎中으로 산출 함을 謂함이니  맞당이 其相親相愛함 원리를 思念함야 일체단결하야 일심애국 함지니 엇지 다만 명의상 칭호로만 例知함고 正분의 當愛와  직분의 當務를 不爲盡力하리오. ….”(《황성신문》 1905년 9월 4일자. 2면 논설: 경고동포).
이주동포		“… 日昨英語學校에서 學員某某諸氏가 該校諸生에게 桑港移住同胞救恤金を 捐付함을 發論하얏는디 其說明이 如左하니 曩者合衆國桑港市에 近世罕靚에 大震災가 疊出하야 多數에 人衆이 負傷或致死하고 巨額에 家屋과 財産이 灰燼或陷潰에 歸하야 酷甚함 慘狀을 呈함은 實로 我一般人類社會에 矜憫을 不禁케하는 者인 故로 列國이 此震災에 對하야 義恤金を 華盛敦政府에 收送함 事   有하되 同政府는 此을 謝絶하고 但列國으로하야 各其自國에 人民을 救恤하라는 答辭가 有함바 列國은 目下其人民을 救護하기 爲하야 委員을 派送하며 恤金を 募集하고 或은 軍艦을 派遣함 者도 有하다 云하나 我韓은 某政府에 義恤金收送함 事   初無하얏거니와 今에 至하야는 비록 收送함지라도 必然見阻될 豈 不啻라. ….”(《황성신문》 1906년 5월 18일자. 2면 雜報: 英語學員 義捐).
국민동포	1906	“現今我韓民國에 蝟集함 愁慘情況이 殆히 枚擧기 難하야 尋常히 他를 顧함 觀念이 不違함지라 我 聖上陛下의 睿서 同地在留의 我韓人民을 拯救함라시는 恩命을 降함옵시고 繼함야 皇室에서 數萬圓을 下賜함옵시니 且某報館에서 有志多士가 義恤金を 募集함는 中에 在함다 云함바 今에 本校에서 該恤金を 募集코자함는 要旨를 說明함노라 概一國國民에 成數된 者는 互相其死生禍福을 同함는 義務가 有함즉 其祖國에서 慘禍를 遭함者   有함지라도 其國民同胞된 者   越視치못함 깃거늘 況海外萬里에 羈踪孤迹이된 者에게며 兼此桑港附近地在留에 我同胞는 舉皆學生이라 ….”(《황성신문》 1906년 5월 18일자. 2면 雜報: 英語學員 義捐).
재외동포		“미령 포와 아국인 친목회에서 금번 상항에 羅災한 동포를 矜憫히 녀이며 금화 29원과 위문함는 長書를 송치함얏고 又該會에  내림함야  방청함던 김봉기, 김홍업 양씨도 각 1원씩을 公립협회 총회로  송치함은 稱賀 不已함며 同포와 부근지 농장에 在함 동포들도 상항 진재를 聞知함고 金화 11원 25전과 위문서를  송치함으로  일반동포의 相愛함는 情을 互相稱賀함 다더라.”(《황성신문》 1906년 6월 29일자. 3면: 재외동포 구휼).

구분	출현연도	세부 내용
내지동포/ 해외동포		“... 內地同胞가 不忘海外之同胞를 如해외동포가 不忘內地之同胞 하며 내지동포가 嚮祝해외지동포를 如해외동포가 향축내지동포 하고 聽해외동포之충고 하며 效해외동포지공립 해야 振作於百難之中 하고 敬懼於宴安之日 하고 今我不戒면 日月其除리라 하고 蒸蒸日上進取不已 하면 有何共立之難哉아. ...”(《황성신문》 1906년 12월 17일자. 2면 논설: 桑港공립신보).
주외동포		“미국 布蛙에 주재동포들이 친목회를 조직하였는디 회원 정원명, 이성철, 이만춘씨 등이 국채보상의 발기함을 聞知하고 不忘祖國의 사상으로 특별개회하고 義金を 모집하여 美貨 오십육圓이십오仙을 본사로 寄送하였는디 萬里海外에 寄寓한 제씨의 애국열성을 聞者莫不贊頌하더라.”(《황성신문》 1907년 5월 16일자. 2면 잡보: 駐外동포의 의거).
본국동포	1907	“본인이 북미 목서가 有加丹에 羈居하는 본국동포의 傳語官으로 이십사개월간을 該城에 住在하다가 본년 二月分에 該地로서 發還本國하온바 서함 일백육십여 度를 본인 휴대하여  팔십여도는 已爲傳遞하였고 所餘 팔십도는 該수신인의 居址가 多有未詳키로 해수신인원을 左開廣佈하오니 口員은 其住址를 본인의 家로 親來領取 하시거나 隨便施行하심을 망함. 皇城北署 大帶洞 第八綜六戶 權丙淑 告白. ...”(《황성신문》 1907년 7월 1일자. 4면, 광고).
전국동포		“이곳은 망녕된 마귀의 붓대를 돌너 주귀 일신상에 부귀싱할 하는 것만 도모하고 전국동포의 矜명을 참혹한 地경에 니르게 하라하니 간특하다 玆 대한신문이여.”(《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1일자. 1면 론설: 대한신문 기자 마귀는 한번 보라(속)).
거류동포	1908	“일시 거류하는 인민으로 무시왕래하여 우금까지 이르니 현금 각 지방에 거류하는 우리 동포가 무려 수십만 명이라. 그런즉 이 지방에 처음으로 우거하는 지는 벌써 사십여 년이오. ... 우리가 이미 부모지국을 버리고 이 지방에 거류할새 동서양 각국 인종과 교섭이 빈삭한즉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일층 보전하고 우리가 행할 의무를 더욱 힘쓰면 우리의 사업이 날로 흥왕하고 치연의 치소를 가히 면할지나 손을 묶고 막연히 앉자 구습에 빠지고 고법만 숭상하여 새 세상 신공기를 마시지 아니하고 새 소식 신학문을 주의치 아니하면 비록 아무 때라도 남의 치소와 남의 수모를 면치 못하리로다.”(《해조신문》 1908년 2월 26일자. 1면 발간하는 말).

4) 김봉섭 2011 참조.

이 중에서 을사늑약(1905) 이후 등장한 ‘국민동포’라는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동포’라는 호칭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6년 4월 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대지진(리히터 규모 7.8~8.3)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대지진으로 공립협회 회관이 파손되고, 현지 동포들도 다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대한제국의 고종황제가 이국땅에서 큰 재난을 당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 위로 전문(電文)과 구휼금(美貨 1,900)을 보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관립 영어학교 교직원들은 ‘상항(桑港)대지진 이주동포 구휼금’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전파했는데 1906년 5월 18일자 《황성신문》에 그 내용이 소개된 바 있다(〈표 2〉 ‘국민동포’ 참조).

이후 ‘국민동포’라는 호칭은 1907년 2월 16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동지친목회 취지서’<sup>5)</sup>, 1907년 11월 26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대한협회’ 연설문, 1908년 4월 21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서북학회’ 관련 기사, 1908년 9월 5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신문사 창립기념 사설, 1908년 11월 1일자 《황성신문》에 실린 논설 등에서 등장하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1905.4.5)된 공립협회의 회원인 최유섭씨가 1907년 6월 7일자 《공립신보》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 만일우리국민이 국민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 같으면 엇지 더갓치 노예의 성질도 외인에게 무릅을 꿇고 국권을 넘어주는 정부가 우리말이우에쳐야시며 또 만일우리가 우리의 턴부흔 자유를 빌이지아니하였시면 엇지 더 잔인악독흔 외인의 학대를 당하리오. 우리인민을 대표흔정부가 이갓치부푼것도 우리의과실이오 우리의 자유를 찾지못하흔것도 우리의 과실이고 또 장리에 아한독립 만년기의초를 세워 천고의수티를 시는 것은 우리인민의 담척이니 이갓치만은 과실이잇고 이갓치 둥터흔 책임이잇는 우리국민동포야. 이갓치 위급존망지츄를 당하여 엇지 초망춘슈에 씬을 끼지못하흔고 …(《공립신보》 1907년 6월 7일자. 3면. 寄書 대성질호 국민동포).

그러나 ‘국민동포’라는 호칭을 널리 대중화하고 이를 사상적으로 개념화시킨 사람은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였다. 1906년부터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활약했던 신채호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국민 전체의 실력에 있음을 간파하고 국권회

5) 발기인. 이종일(李鍾一), 이준(李儁), 이인직(李人植), 유맹(劉猛), 유문환(劉文煥), 신해영(申海永), 심의성(沈宜性), 오세창(吳世昌), 유성준(兪星濬), 윤치오(尹致昨), 정진홍(鄭鎭弘), 정운복(鄭雲復), 태명식(太明軾), 한석진(韓錫振), 홍궁섭(洪肯燮), 권동진(權東鎭), 황철(黃鐵).

로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던 대한인(大韓人)들에게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의 국민이 되어줄 것을 호소하면서 ‘국민동포’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가을이 오면 비가 기이니 첩첩흔 회포를 거두어 우리 국민동포에게 고희노라. 오호-라. 우리 동포여. 우리가 동반도의 신성한 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나서 이 나라에서 자라기를 이제 이미 스천여년을 지닌지라.(《대한매일신보》 1908년 8월 21일자. 1면 논설: 품은 회포를 날리고 흙/ 練丹生).

… 오호-라. 국민동포-여. 동포들은 어서어서 세계의 쉼세를 숲혀서 이거슬 리용하며 문명의 진보를 당기어 이거슬 환영하며 한국의 디위를 보와 이거슬 분발홀지이다.(《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3일자. 1면 논설: 이십세기 식국민).

이처럼 ‘국민동포’라는 호칭에는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외에 근대국가의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특히 이런 개념을 이어받은 곳이 1919년 3·1운동의 결과로 탄생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선언문’(1919.4.11)에서 ‘국민동포’라는 호칭을 재구조화하여 ‘동포국민’이라는 호칭을 내세웠는데(국회도서관편 1974, 3)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강제로 빼앗긴 상태에서 ‘국민’보다는 ‘동포’에 방점(傍點)을 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존경하고 열애하는 아 2천만 동포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 함으로부터 남과 녀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인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의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 차시를 당하여 본정부·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여 조직되였나니 본정부·전국민으로 더브러 전심코 戮力하여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 바를 준수하여 국토광복과 邦基확고의 대사명을 果하기를 자에 선서하노라. 동포국민이여 분기할지이다. … 우리의 정의 맞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이다. … 대한민국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 IV. 대한민국임시정부에게 해외 이주 한국인들은 어떤 존재였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권상실기의 ‘국민동포’와 일제강점기의 ‘동포국민’ 양자를 잇는 교량자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시기에 한반도의 경계를 벗어나 해외로 이주하였던 재외동포의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의 의지를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순간까지 불태우게 했던 촉매제였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 구성원의 대다수는 해외 이주 한국인들이었다. 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 소재 회의장에서 개최된 임시의정원(의장 이동녕)<sup>6)</sup> 회의 결과 국무총리에 이승만(재미), 내무총장에 안창호(재미), 외무총장에 김규식(재미), 법무총장에 이시영(재중), 재무총장에 최재형(재러), 군무총장에 이동휘(재러), 교통총장에 문창범(재러) 등 전원 해외 이주 한국인들로 임시정부의 첫 각료 진용이 구성되었다(1919.4.11). 물론 국내에서 먼저 조직된 한성정부(1919.3.27)도 집정관 총재에 이승만(재미), 국무총리 총재에 이동휘(재러), 외무부총장에 박용만(재미), 내무부총장에 이동녕(재중), 군무부총장에 노백린(재미), 재무부총장에 이시영(재중), 법무부총장에 신규식(재중), 학무부총장에 김규식(재미), 교통부총장에 문창범(재러), 노동국총관에 안창호(재미) 등 해외 이주 한국인들로 첫 정부 각료를 구성하였다.

1919년 당시 상황은 이규갑의 증언 「한성임시정부 수립의 전말」에 따르면 “우리가 임시정부를 조직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 일정의 눈을 피하여 정부 구실을 하기는 불가능하였다. … 정부도 만들었으니 이를 해외에 가지고 가서 행동의 자유가 보장된 국제무대에 가서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신동아 69/04, 182)는 분위기였으므로 임시정부의 활동무대는 국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내 거주 한국인들은 물론 해외 이주 한국인들까지 자기 국민(인민)으로 인식하였다. 즉,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임시정부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과 임시정부 국무위원 전원(이승만·안창호·김규식·이시영·최재형·이동휘·문창범)의 이름으로 사실상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전문 10조)을 제정, 선포(大韓民國臨時政府紀事

6) 현순, 손정도, 신익희, 조성환, 이광, 이광수, 최근우, 백남철, 조소앙, 김대지, 남형우,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김철, 선우혁, 한진교, 진희창, 신철, 이한근, 신석우, 조동진, 조동우, 여운형, 여운홍, 현창운, 김동삼 등 29명.

錄 第一回集 1919)하였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제4조),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제6조) 등을 규정하였다.<sup>7)</sup>

이후에는 “독립운동에 대한 진선을 정제키 위하여 우선 해외에 재류하는 동포로부터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임시정부 내무부 주도의 재외동포 인구조사(1937) 계획을 수립하였고(한민. 1936년 7월 30일자), “정부에서는 국민의 호구(戶口)와 그들의 정형(情形)을 자세히 알아야 행정상 필요하고, 또 국민된 이들도 이것을 자세히 등기할 의무가 있으며, 또 따라서 권리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호구등기부 제출을 독려(국민보 37/02/03)하는 등 재외동포를 임시정부의 국민으로 명시화하였다.

당시 상황이 아직 국토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열강들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권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한국인 전체에게 미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자유(제4조)와 권리(제5조)와 의무(제6조)를 처음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초창기부터 운영의 상당액을 해외 이주 한국인들의 후원에 의존하였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490). 예를 들어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첫 청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대한인국민회 중앙회장이었던 도산 안창호가 갖고 온 미주동포들의 후원금 2만5천 달러 덕분이었다(한시준 2016, 59-63). 1919년 7월 8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총장 자격으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에 출석한 도산이 「시정방침연설」에서 인구조사, 공채 발행, 인두세(인구세) 등으로 임시정부의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였던 것(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편 2000, 83)이나 1922년 이후 국내의 연통부와 교통국이 일본경찰에 의해 파괴된 뒤부터는 국내 거주 한국인들의 애국금과 인구세가 고갈되기 시작하고, 1925년 이승만의 탄핵 이후 미국 거주 동포들의 후원금이 대부분 구미위원부로 들어갔을 때도 임시정부가 임시헌법(1925.4.7) 제27조에서 재외동포에게 “재정을 부담하며 병역에 복하며 징발에 응하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7)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此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及 빈부의 계급이 無하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信書·주소·이전·신체 及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公民 자격이 有한 자는 선거권 及 피선거권이 有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及 병역의 의무가 有함. 제7조. 대한민국은 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進하여 인류의 문화 及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刑·신체刑 及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난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특히 중일전쟁(1937-1945)이 본격화되자 임시정부는 건국강령(1941.11.25) 4(口)에서 재외동포를 포함한 전체 대한민국 인민에게 “법률을 수하며 세금을 반하고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보위하며 사회를 시설지지하는 의무”를, 임시헌장(1944.4.22) 제6조에서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을 부흥하고 민주정치를 보위하는 의무, 헌장과 법령을 준수하는 의무, 병역과 공역에 복무하는 의무, 국세를 납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던 것(국회도서관편 1974, 3-23) 역시 재외동포의 애국심과 임시정부 지지를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 V.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해외 거주 한국인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시정부와 재외동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따라서 임시정부는 재외동포와 관련한 법·제도는 물론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첫째, 1919년 9월 11일, 한성정부·대한국민의회·상해임시정부 등 3자 통합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체에 빼앗긴 대한제국의 영토와 국민들을 뛰어넘어 한반도 밖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와 국민의 관계와 경계를 정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게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한다.

이들 조항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각각 계승되었다.

둘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 의원을 선거함에 있어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제20조에 해외 거주 한국인 대표를 의원 총수 57명 중 14명을,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약헌(1927.4.11) 제6조에 해외 거주 한국인 대표를 의원총수 54명 중 13명을 각각 할당하였다. 이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뛰어넘어 ‘해외선거구제’를 사실상 도입한 역사적 사례이다.

제2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충청·경상·전라·함경·평안 각도 급(及) 중령(中領)교민, 아령(俄領)교민에 각 6인, 강원·황해 각도 급(及) 미주(美洲)교민에게 각 3인을 선거함.

제6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충청·경상·전라·함경·평안 각도 급(及) 중령(中領)교민에서 각 5인, 강원·황해 각도 급(及) 미주(美洲)교민에서 각각 3인을 선거한다.

셋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의 극심한 탄압으로 연통제, 교통국, 선전대 등 국내 비밀조직 유지가 어렵게 되자 1920년 3월 16일, 국무원령 제2호 ‘임시거류민단체’를 공포하여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기반인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자조·자치능력을 독려하였다.

제1조. 내무총장이 광복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정 구역 안에 거류하는 국민으로 거류민단을 둔다.

중국 상해의 경우, 1919년 3월에 조직된 교민친목회가 같은 해 9월에 대한인민단으로, 이듬해 1월에 상해대한거류민단으로 변모하였고, 1920년 3월에 이를 법제화하여 임시정부의 산하기구로 만들었고, 10월 7일 내무부령 제4호 ‘임시교민단체’를 공포하여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외 각지에 기구상으로는 내무총장 아래에 속하지만 교민단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상 자치조직인 교민단과 의결기관인 의사회(독립운동·의용대 조직·군사자원 모집·재정 등 담당)를 설치할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리고 1923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지역에서 호구(戶口)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교민단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중국 상해·천진 등에 조직된 거류민단교민단 외에 중국 만주에는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가 있었고, 미국 본토와 하와이, 멕시코와 쿠바, 프랑스 등지에는 대한인국민회 등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정점으로 해외 거주 한국인들과의 교량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중국국민당 정부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들의 귀국문제와 중국 거주 한국인들의 보호를 요청하는 비망목을 1945년 8월 24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9월 17일에는 중국 동북3성(만주) 거주 한국인들의 보호도 요청하였다. 또한 1945년 11월 1일, 본국 귀환을 기다리던 한국인들의 업무를 담당할 대표기구로서 주화대표단(단장 박찬익)을 1948년 8월 10일까지 설치<sup>8)</sup>하

8) 단장 박찬익(朴贊翊), 대표 민필호(閔弼鎬), 지청천(池青天). 출처: <https://search.i815.or.kr/Ruin/RuinforeignView.jsp?id=CC336346> (검색일: 2019.07.11.).

였는데, 이는 임시정부가 자기 국민, 사실상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관심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라고 볼 수 있다.

## Ⅵ. 맺음말

1910년 8월 29일, 일제의 병탄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대한제국의 신민들은 일본국의 식민지 신민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시 국내외 한국인들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폭발한 독립국으로서, 그리고 자주민으로서의 거센 열망은 기존의 군주주권국가를 국민주권국가로, 전제군주제를 민주공화제로 일순간에 바꿀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결실이 바로 대한민국임시정부(1919~1945)였다.

물론 현재 우리 학계 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둘러싼 성격 규정이 제각각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립된 국민주권 국가이고 민주공화제 정부라는 견해(한시준 2016, 14~26)가 있는가 하면 국제법상 통치권(주권)이 미치는 대상인 국토와 국민이 없었으므로 일반 정부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르고, 대한제국과 시간적 연속성이 없고 주체세력이 다르고 이념이 달라 망명정부가 될 수 없다는 견해(조동걸 1996)도 있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제강점기에 국권상실로 인해 망국민이 되었던 한국인들에게 뭔가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로서는 국민적 기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이를 해외 거주 한국인, 즉 ‘재외동포’와의 관계설정에서 물꼬를 찾아야 했다. 이들이 한반도를 떠나야 했던 이유나 동kina 시기는 천차만별이었지만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해외 이주(거주)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였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정부를 이끌어갈 핵심세력과 이들을 지지해줄 국민적 기반이 필요하였다.

이번 논문에서 다룬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재외동포’라는 주제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정부와 재외동포사회, 그리고 내국민과 재외동포 간에 어떤 관계설정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는 계기였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역대 정부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내용을 어떻게 계승·단절하고 있는 지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데 필요한 기초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金大鳴. 1800. 白巖集(목활자본).
- 대한민국 제헌헌법. 1948.7.17.
- 조선왕조실록. 1887. 고종24년.
- \_\_\_\_\_. 1904. 고종41년.
- \_\_\_\_\_. 1907. 고종44년.
  
- 공립신보
- 국민보
- 대한매일신보
- 독립신문
- 한민
- 해조신문
- 황성신문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생활의 길잡이 5. 지학사.
- 국사편찬위원회. 2005. 재외동포사 편람.
- 국회도서관편. 1974. 대한민국임시의정원문서.
- 권희영. 1999. 한국과 러시아: 관계와 변화. 국학자료원.
- 김계르만. 2005. 한인이주의 역사. 박영사.
- 김봉섭. 2011. 재외동포강국을 꿈꾼다. 엠에드.
-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편. 2000. 도산안창호전집 6.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1972. 독립운동사 4.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 외교통상부. 2009. 한국외교 60년. 1948-2008. 외교통상부.
- 이광규. 2006. 못다 이룬 꿈. 집문당.
- 이규갑. 1969. 한성임시정부 수립의 전말. 신동아1969(4).
- 조선은행 조사부. 1948. 조선경제연보 1948. 조선은행.

- 최진욱. 2007.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정책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통일연구원.
- 한시준. 2016.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도자들. 역사공간.
- 조동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민국임시정부」 항목. 출처: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5017> (검색일: 2019.07.11).
- 출처: <https://search.i815.or.kr/Ruin/RuinforeignView.jsp?id=CC336346> (검색일: 2019.07.11.).
  
- 노컷뉴스
- 뉴스1
- 뉴스파워
- 뉴시스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머니투데이
- 미주한국일보
- 연합뉴스
- 월드코리안
- 재외동포신문
- KBS
- KTV
- YTN

● 투고일: 2020.01.15. ● 심사일: 2020.07.03. ● 게재확정일: 2020.07.16.

## | Abstract |

#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Overseas Koreans

Kim Bongseop (Overseas Koreans Foundation)

Overseas Korean policies of the PGROK(the following, 'PGRO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GROK extended the concept of sovereignty, territory, and nationality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granted Korean people in China, Korean People in Russia, and Korean People in America representation in the Provis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GROK established and proclaimed a 'temporary settlement corporation' system to encourage the autonomy and self-sufficiency across overseas Korean communities. Moreover, when the Japanese Empire declared its unconditional surrender, the PGROK established the 'Korean People in China at Delegation Foreign Affairs to China' and took many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repatriation and overall safety of overseas Koreans. The PGROK which had no choice but to operate overseas due to the surveillance of the Japanese Empire, desperately needed public support and found it through the cultivation of relationships with overseas Korea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GROK and Overseas Koreans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Korean Nationals=Korean Compatriots” and vice versa.

〈Key words〉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GROK), Overseas Koreans, Overseas Korean Communities, Korean Nationals, Korean Compatriots